

高麗朝 濟州民亂의 性格

高 昌 錫*

I. 序 言

제주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선 부딪히는 문제는 史料의 부족이다. 고대는 물론, 高麗時代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史料라야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 官撰史書가 고작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단편적이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제주도에 대한 연구상황을 보면¹⁾ 몇 편의 人物 관계사나 元과의 관계를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三別抄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것도 전체 분량이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은 드물고 論考의 일부로써 다루어진 것이 많다. 이는 사료의 빈곤도 원인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한정된 시각에서 본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제주도 관계 史料, 이를테면 국외의 史書나 국내 文集類 등의 발굴이 시급하며 아울러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감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사실 本稿를 다듬에 있어서도 사료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미 先學들에 의해 거론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나 우리는 高麗朝의 테두리 안에서 제주도 民亂의 성격을 이해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고려 475년 동안의 역사는 편의상 전후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太祖로부터 睿宗 때까지 약 200년에 걸친 시기이며, 후기는 仁宗으로

* 제주도·동양사

1) 金宗業의 :〈解放後 濟州研究概觀—歷史考古分野〉《耽羅文化》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pp. 285-328

부터 고려 말년까지 약 270년 동안이다. 특히 후반기는 변란시대로서, 李賚謙, 妙淸, 그리고 鄭仲夫의 난 등으로 이어지면서 무인들의 전횡·변란에 뒤이어 高宗 이후 약 30년에 걸친 몽고의 침입, 고려 말경의 왜구·紅巾賊 등 外患이 연속되었다. 더우기 중앙에서의 계속된 반란은 하극상의 풍조를 불러 일으켰고 그 해독을 백성에게까지 끼침으로써 지방에서도 민심의 동요와 아울러 草賊이 사방에서 봉기함으로써 변란의 풍조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으니 제주도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²⁾

(1) 중앙에 있어서의 武人の 발호로 거듭되는 국왕의 폐립과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국가기강과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그 파문이 전국에 미쳐 특권계층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이 현실개혁을 목적으로 쫓기하게 되었고,

(2) 지방에서는 탐관 오리의 횡포 즉, 관리의 탐학과 수탈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이에 견디지 못하여 반란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安撫使 등을 파견하여 민정을 살피고 賊吏를 적발케 하였으나 이것은 한갓 貪官·賊吏에 대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써 관리의 탐학은 의연히 성행하였으며,

(3) 이와 아울러 水旱의 災異와 기근이 자주 일어나 백성들이 生路를 잃게 되었던 것이 주원인이다.

II. 民亂의 事例

고려시대 제주도에서 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郡縣으로 개편된 이후부터였다. 이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것과는 관계가 있다. 기록상 중앙에서의 관리 파견은 毅宗 16년(1162)경에³⁾ 耽羅令으로 부임한 崔陟卿이 그 시초다. 《高麗史》 99, 崔陟卿傳에,

2)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大學校出版部 1985, pp. 395-396 참조.

3) 崔陟卿의 최초 耽羅令 부임을 毅宗 16년으로 보는 이유는 그를 추천한 崔允儀가 判吏部事가 된 것이나 사망한 해가 모두 의종 16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新丘文化社: 《韓國人名事典》 1986 참조.

「判吏部事 崔允儀가 崔陟卿이 濟直하다는 말을 듣고 耽羅을 제수하려고 하자, 陟卿은 지방관인데다 지역이 또한 僻遠하므로 굳이 사양하였다. 允儀는 “탐라는 지역이 멀고 풍속이 사나워서 守令노릇하기가 실로 어렵기 때문에 자네에게 이를 補하려는 것이니, 자네는 꺼려하지 말고 가서 먼 곳의 백성을 어루만져 나라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한다면 마땅히 좋은 벼슬로써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陟卿은 부임하여 이익되는 것을 일으키고 폐단되는 것을 혁파하니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여겼다. 돌아오니 允儀는 죽은 뒤였다. 가난이 심하여 살아갈 수 없으므로 장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매마침 全羅按察使가 급보를 올려, “탐라인들이 舍尉의 侵暴에 시달려 반란을 일으키고, “만약 陟卿을 승으로 삼는다면 마땅히 무기를 버리겠다”고 한다 하였다. 王은 재상 崔夔에게, “이와 같은 賢人이 있는데 어찌 쓰지 않으리오” 하고 불러서 綾綱을 하사하고 곧 耽羅에 임명하였다. 陟卿이 가솔을 데리고 가기를 청하자, 王이 이를 허락하였다. 탐라에 임명된 자가 아내와 함께 간 것은 陟卿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탐라인들이 陟卿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배를 마련하여 그를 맞이하였고, 境內에 들어서자 다들 창을 내던지고 열을 지어 절하면서, “공이 오셨으니 우리들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전과 같이 안도하였다. (그는) 明宗 元年에 詹事府 注簿로 轉職되었다.」

고 한 기사가 보인다. 이에 따르면 崔陟卿의 후임으로 부임해 온 舍尉들의 침묵에 시달리다 못한 島民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의 시초다. 이에 朝廷에서는 全羅按察使 趙冬曦를 濟州安撫使로 임명하여 宣諭케 하는 한편⁴⁾ 崔陟卿을 다시 耽羅승으로 임명함으로써 반란은 진정되었다. 그 난의 경과를 前揭書 18, 毅宗 22년(1168) 11월조 에는,

「丁丑에 耽羅安撫使 趙冬曦가 入觀하여, “탐라는 험하고 멀어서 攻戰이 미치지 못하나 토지가 비옥하여 경비는 나오는 곳입니다. 앞서서 貢賦가 번거롭지 않아서 백성들이 생업을 즐겼는데, 근자에 관리의 불법으로 賊首 良守 등이 모반하여 守宰를 축출하였읍니다” 하였다. 王은 冬曦에게 명하여 符節을 가지고 가서 宣諭케 하였는데, 난민들이 스스로 항복하자 良守 등 2명과 그 도당 5명을 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곡식과 布帛을 내려서 무마하였다.」

고 하였다. 즉 관리가 불법적으로 貢賦를 부과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봉기하여 난을 일으켰으니 결국 반란자에 의

4) 《東史綱目》9, 毅宗 22년 11월조.

해 守令이 축출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란의 직접적인 동기는 백성들이 汚吏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중앙의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에 따라 지방관의 탐학도 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그만큼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관리의 침탈과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곤궁은 그들의 동요를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流言과 誣告도 나돌게 되었던 것이다. 그 例로 “明宗 16년(1186) 7월에 어떤 사람이 ‘탐라가 叛하였다’고 告하자 王은 몹시 놀라서 兩府를 불러 처리할 방략을 묻고, 즉시 閣門樞候 獨孤忠과 郎將 池資深을 安撫使로, 式目錄事 張允文을 大府注簿·行耽羅縣令으로 삼아 각각 비단을 내려주며 곧 독촉하여 길을 떠나게 하고, 前 令尉에게는 모두 중한 벌을 주었다. 뒤에 소식을 들으니 반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詔命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允文이 부임한 뒤 前 令尉는 마침내 연좌되어 免職되었다”는 기록이 《高麗史》에 보인다.

이는 당시 유언비어 및 무고가 만연되었던 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같은 전후 사정에 대해서 史臣은, “明宗이 남의 거짓말에 迷惑된 것은 이른바 ‘그럴 듯한 말로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것으로 허물될 것이 없으나 뒤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고발한 자에게 誣罔의 죄를 주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이 讒賊의 입을 招來하고, 禍亂의 단서를 발생하게 한 까닭이라”⁵⁾ 평가기도 하였다. 이것은 守令의 가렴주구로 언젠가 민란이 재연될 기운 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며, 그 예가 神宗 5년(1202) 10월에 나타난다. 즉 煩石·煩守 등에 의해 일어난 반란이 그것이다. 반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少府少監 張允文·中郎將 李唐續을 탐라에 보내어 안무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의 상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그 해 12월에 가서야 주동자가 처형됨으로써 진압되었다.⁶⁾

관리의 가렴주구와 아울러 土豪·權勢家の 토지 侵奪, 租稅·賦役의 加重도 백성들의 생활을 곤궁케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 38, 濟州牧條에,

5) 《高麗史》 20, 明宗 16년 7월조.

6) 同上書 21, 神宗 5년 10월·12월조.

「그 풍속이 야만이고 거리가 또 먼데다가 屋主·王子·土豪의 강한 자가 다투어 평민을 차지하고 使役을 시켜 그것을 人祿이라 하며, 백성을 학대하여 욕심을 채우니 다스리기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東文鑑》에, “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니 본래 논은 없고 오직 보리·콩·조가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선이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차츰차츰 침식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金坵가 判官이 되었을 때 백성의 고통되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으고 담을 쌓아서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하게 여겼었다.」

고 한 것은 토지침탈과 부역 가중의 例이며, 《高麗史》121, 金之錫傳에는

「金之錫은 그 世系가 未詳이나, 高宗末에 濟州副使가 되었다. 州俗에 남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콩 1斛씩을 바치고, 衙吏 수백 명이 해마다 말 할 필씩을 바치었다. 副使와 判官이 이를 나누어 받았으므로 이 고을을 맡은 자는 비록 가난한 자라도 모두 致富하였다. 井奇·李著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일찌기 이 고을을 다스리다가 모두 坐贓으로 免職되었다. 之錫이 州에 이르자 곧 콩과 말의 歲貢을 덜어주고, 청렴한 衙前 10명을 뽑아 衙吏로 임명하니 政事의 맑음이 물과 같았고, 吏民이 기꺼이 복종하였다. 이보다 먼저 慶世封이라는 자가 제주 守衛이 되어 역시 清白으로 일컬어졌는데, 고을 사람들이 “앞에는 慶世封이 있고 뒤에는 金之錫이 있다.”

는 내용은 조세의 과다에 관한 것이다. 또 《高麗史節要》8, 元宗 元年(1260) 정월조에,

「判禮賓省事 羅得瑛을 濟州副使로 삼았다. 이에 앞서 宋召가 제주부사로 있다가 贓을 범하여 파면당하였는데, 사람들이, “제주가 지난날에는 작은 도둑(宋召)을 치렀는데 지금은 큰 도둑(羅得瑛)을 만났다”고 하였다.」

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貪官·汚吏의 苛斂誅求와 土豪·權勢家의 土地兼併, 租稅·賦役의 가중은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케 하여 流離乞食하거나 도적으로 化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 사회는 더욱 피폐하여 民亂을 야기케 하기도 하였다. 그 한예로 《耽羅志》建置沿革條에,

「元宗」8년 봄에 草賊 文幸奴가 난을 일으켰다.」

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당시 백성들이 관리의 수탈에 신음하면서도 감히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생각된다. 王朝의 모순 속에서도 그들의 의식수준은 꾸준히 성장하여 온 것이다. 崔瀼의 《拙叢千百》 1, 金文正公墓誌에,

「(金須)는 抄軍을 거느리고 耽羅에서 高汝霖을 만났는데, 이때 賊은 珍島를 지키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밤낮으로 보루를 축조하고 병기를 마련하여 珍島의 三別抄軍이 到來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守土者가 머뭇거리면서 협력하지 않아 그들이 오는 길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金須는 평소 大義로서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 勇力도 백배하였다. 싸움에 임해 賊의 선봉 부대를 거의 섬멸하였으나 土人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결국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高汝霖과 함께 賊陳에서 패물하였다.」

고 한 것은 고려 官軍과 三別抄사이의 제주 攻防戰에서 관군 패배의 이유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土人 즉 島民이 三別抄를 도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對蒙 항전을 전개하고 있는 삼별초군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 짐작된다.

당시 백성의 생활 사정은 三別抄 정벌 뒤인 元宗 15년(1274) 2월 元나라에서 濟州留守官軍과 高麗의 士卒 1,400명 및 제주 백성 10,223명에게 고려로 하여금 糧料를 지급케 한 것⁷⁾이나, 忠烈王 3년(1277) 3월 탐라에 크게 기근이 들어 백성이 문을 닫고 죽는 자가 있었다⁸⁾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친 元의 도적·죄수의 유배도⁹⁾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관리의 수탈은 여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를 鎮守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軍官에 의한 수탈도 덧붙여졌다. 《高麗史節要》 忠宣王 3년(1311) 7월조에,

「왕이 傳旨를 내려, “제주 백성은 사리상 마땅히 구휼해야 할 것인데, 그 곳의 牧官·軍官들이 함부로 침탈을 감행하여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니

7) 同上書 27, 元宗 15년 2월조.

8) 同上書 28, 忠烈王 3년 3월조.

9) 同上書 28, 同王 元年 4월 및 3년 5월·8월조.

마땅히 式目錄事 1인을 파견하여 금지케 하라.]」

는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蒙古 지배하에서는, 忠肅王 때에 使用·金成 등이 난을 일으켜 星主·王子를 내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高麗史》 34, 忠肅王 5년(1318) 2월 戊申條에,

「濟州民 使用·金成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서 난을 일으켜 星主·王子를 내쫓았다. 星主·王子는 달아나 이 사실을 알렸다. 戊午에 檢校評理 宋英을 파견하여 安撫케 하였는데, 도착하기 전에 賊黨이 스스로 渠魁 2인을 죽이고 항복하자 宋英으로 牧使를 삼았다.」

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 난의 원인을 同年 4월조에는,

「4월 戊申에 王은 上王(忠宣王)의 명령으로 大護軍 張公允·濟州副使 張允和를 巡軍獄에 가두었다가, 곧 장공윤은 紫燕島로, 張允和는 靈興島로 유배시켰는데, 이는 대개 耽羅의 賊이 일어난 원인이 이 두 사람의 貪暴에 연유된 까닭이었다.」

고 하였다. 더우기 당시 亂民들은 “만약 李伯謙이나 宋英이 와서 鎮撫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叛하겠느냐”¹⁰⁾ 한 것을 보던 星主·王子의 侵奪도 민란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오히려 官吏와 土豪·權勢家の 二重的인 苛斂誅求가 主要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조정에서는 同年 5월에 上護軍 裒廷芝를 파견하여 存撫使로 삼았는데,¹¹⁾ 난은 6월에 가서야 진압되었다. 그리고 同年 7월에는 元나라에서 吏部尙書 卜顏, 必闡赤(寫字人) 賈驢를 파견하여 탐라의 叛狀을 문책하기도 하였다.¹²⁾

이렇듯 貪官·汚吏의 가혹한 수탈은 外勢의 지배하에서도 이루어졌고, 여기에 더하여 蒙古·高麗에의 二重的인 貢賦와 선박전조·정벌군 징발도¹³⁾ 민란 발생의 충분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조정에서는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사신을 파견하여 安撫하기도 하고

10) 《高麗史節要》 24, 忠肅王 8년 5월조.

11), 12) 《高麗史》 34, 同王 5년 5월 및 7월조.

13) 拙稿: 〈麗元과 耽羅와의 關係〉 《濟州大學校論文集》 17, 1984. pp. 371~396.

혹은 貪暴한 守令을 流配시키기도 하였으나, 통제력이 약화된 朝廷下에서 관리들은 거리낌없이 賈官買職이나 賂物授受를 자행하였고, 그에 따라 백성들의 침탈도 依然하였으니, 이러한 朝廷의 무력화와 관리의 횡포, 부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紀綱의 해이는 민란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忠肅王 10년(1323) 정월에 濟州萬戶 林淑이 제 마음대로 任地를 이탈하였다가 발각되어 行省에 수감되었었는데, 뒤에 이를 다시 복직시키려고 하자 濟州人이 익명의 투서를 작성하여 市街에 게시하기를 “林淑이 몹시 탐하고 욕심이 많아서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任地로 오면 우리들은 무슨 죄인가. 더우기 左右司郎中 烏赤이 林淑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그를 방면하였으니 省府에서 만일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上省에 호소할 것이라”고 하므로, 林淑을 파면시키고 朴純仁으로 대체하였다¹⁴⁾고 한다.

또한 恭愍王代로 넘어오면서부터는 牧胡의 亂에 星主·王子와 島民이 함께하기도 하였다. 牧胡의 亂은 恭愍王의 排元政策과 舊土收復政策, 明의 馬匹要求 등이 原因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데¹⁵⁾ 이때 牧胡들이 州民을 피어 난에 합류시키고 있는 것이다. 《高麗史》111, 林樸傳에,

「16년에(林樸을) 濟州宣撫使로 삼았다. 樸이 제주에 이르러 萬戶에게, “連達牧子가 反側하기를 좋아하니, 자네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撫綏하여 事端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고 또 星主·王子에게는 “자네들은 神人の 後裔로서 新羅가 들어가 星主가 되었고, 本朝에 들어와 王子가 되어 歷代를 服事하였으며, 또한 歷代가 자네들을 대우함이 심히 후하였으니, 자네들은 마땅히 각기 한 마음으로 服事하여 牧子와 더불어 亂을 선동하지 말라” 하니 星主·王子 및 軍民이 모두 俯伏하여 “감히 命에 쫓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보다 앞서 宣撫하러 온 자가 대개 탐욕하여 侵漁를 자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는데, 牧胡들이 이를 피어 자주 拔하였다. 樸이 부임하는 길에 羅州에 들러 항아리에 물을 길고 가서는 차 끓인 것조차 입에 대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서로 “聖人이 오셨다. 王이 파견한

14) 《高麗史》35, 忠肅王 10년 정월조.

15) 拙稿: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4,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1-24

官員이 모두 林宜撫와 같다면 우리들이 어찌 叛함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州人 中에는 그가 물을 길고 간 것을 譏弄하는 자도 있었다.]

고 한 것은 당시의 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恭愍王 23년(1374) 9월 崔瑩에 의해 牧胡가 정벌된 뒤에도 亂은 계속 일어났다. 禡王 元年(1375) 11월에 車玄有 등이 난을 일으켜 官舍를 불태우고 安撫使 林元·牧使 朴允淸·馬畜使 金桂生 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조선조 세종 16년(1334) 8월 前 參議 高得宗의 上書에 의하면, “臣의 고향인 제주는 예전 乙卯年(1375)에 車玄有와 芮成의 무리들이 馬賊이 되었었는데, 그때의 萬戶가 군사를 뽑아서 잡고자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도리어 도둑에게 獲한 바가 되었다. 이에 도둑이 더욱 성하여 권세를 잡아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逆謀를 꾸미고 난동을 일으켜, 그 害가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土官들이 나라의 威靈을 힘입어 능히 그 무리들을 평정시켰읍니다”¹⁶⁾라고 하였고, 末松保和의 《吏文》에는, “崔瑩 등 관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간 직후인 10월 6일 島人 차현유 등이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고 안무사 林完·목사 朴允淸·馬畜使 金桂生 등을 살해하고 官舍의 造物을 불태우며, 牛馬를 宰食하였는데 그 수 헤아릴 수 없었다. 때문에 典客令 金仲光이 洪武 8년 정월 21일 洪孫白 등을 섬에 보낼 무렵 성주 高實開·진무 林彥·千戶 高德雨·島人 文臣輔 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차현유 등의 賊衆을 勦捕했으므로 조정에서는 金仲光을 제주단호 겸 목사로 삼아 句當·守禦케 했다”¹⁷⁾고 하였다. 즉 최영의 귀경 후 典客令 金仲光을 파견하여 宥旨를 가지고 該島를 안무케 함에 이르러 판명된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동왕 2년에도 목호의 잔여 세력이었던 哈赤 姜伯顔 등 13명이 난을 일으켜다가 목사 김중광에 의해 진압되고 그 가족이 羅州·光州 등지로 분산되기도 하였다.¹⁸⁾

이들 사건은 어떻게 보면 麗廷에 대한 항거로도 볼 수가 있다. 그것은《高

16) 《朝鮮王朝實錄》 65, 世宗 16년 8월 조.

17) 末松保和：《吏文》 都統使崔瑩討平耽羅及起取馬四事(條) 참조. pp. 41~45.

18) 《高麗史》 133, 辛禡傳 2년 5월 조.

麗史》136, 禰王 12년(1386) 7월조에.

「典醫副正 李行·大護軍 陳汝義를 탐라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明에서는 탐라 말을 취하고자 하고 또 이 십이 빈번히 叛하는 까닭으로 李行 등을 파견하여 그 子弟를 招諭하게 하였더니, 다음 해 4월에 이르러 李行은 星主 高臣傑과 아들 鳳禮를 데리고 上京했는데 탐라의 歸順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한 데서 엿볼 수 있으니, 결국 제주도가 고려에 완전히 복종의 태도를 보인 것은 禰王 13년(1387) 4월부터였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고려시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民亂의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성격상으로 본다면 제주도의 民亂도 本土에서 일어났던 것들과 軌를 같이 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수탈과 토호·권세가의 토지 침탈, 백성들에게 과해진 조세·부역의 가중 등으로 농촌사회가 파쇄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해져서 일어난 民亂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安撫使를 파견하여 宣撫하거나 탐관오리를 파면 혹은 유배시키기도 하였지만, 항구적인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民亂은 근절될 수 없었다. 더우기 外勢下에서의 중앙 통제력의 약화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民亂의 당사자들도 눈앞의 탐관오리의 구축이나 善政官의 파전을 요구했을 뿐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은 요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 제시는 정부가 수용한다는 선에 선 이른바, 그들의 성장과 사회의식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끝내는 제주도가 外地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內地化로의 정책을 강구하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民亂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